

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- . 2007. 8. 21 : 김석관 의원외 3인 발의
- . 2007. 8. 21 : 의회운영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2007-54호)
- . 2007. 9. 4 : 제115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
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. 본회의장에 전자투표 시스템의 구축으로 표결시 전자투표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동 규칙을 일부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.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및 제45조의 표결참가와 표결방법을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시 출석 확인과 표결방법을 추가함.
- .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개정으로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의 간사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개정.
- . 신.구조문 대비표 : 별첨참조

다. 관계법령

- .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, 제45조, 제53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경호)

- 본 회의장에 전자투표 시스템의 구축으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및 제45조에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시 표결참가 및 표결방법을 추가하여 전자투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제53조의 간사 직명을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애 따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- 본 개정 규칙안은 관련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,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3조(표결의 참가)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.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<u>투표함이 폐쇄될때까지</u>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	제43조(표결의 참가) 표결할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.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<u>의장의 투표 종결 선포 전까지</u>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 다만,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표결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
제45조(표결방법) ①표결할 때에는 <u>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</u>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	제45조(표결방법) ①표결할때에는 <u>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</u> 다만, 투표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 할 수 있다.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, 재적의원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
제53조(의사일정과 개회일시)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<u>간사와</u> 협의하여 정한다.	제53조(의사일정과 개회일시)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<u>부위원장과</u> 협의하여 정한다